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

< Check List 1 >

- ☐ 퇴직자 사적 접촉 관련으로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(√)되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종료
- ☐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

체크 항목	체크
퇴직자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	☐
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퇴직자를 접촉한 경우	-
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	☐
경조사 이외의 돌잔치, 환갑 등	☐
직무와 무관한 동창회, 친목 모임,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	☐
공청회,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	☐
타 기관 주관 공식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	☐

< Check List 2 >

- ☐ 퇴직자 사적 접촉 유형이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(√)되는 경우에는 Check List 3로 진행
- ☐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

체크 항목	체크
골프를 함께하는 행위	☐
여행을 함께하는 행위	☐
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	☐

< Check List 3 >

- ☐ 사적 접촉 퇴직자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(직무관련자)로
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(✓)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☐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

체크 항목	체크
직무수행과 관련하여 <u>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</u>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	☐
직무수행과 관련하여 <u>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</u>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	☐
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<u>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</u>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	☐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,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,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	☐

☞ 직무관련자는 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